##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08

발의연월일: 2021. 2. 8.

발 의 자:이용호·김상훈·김윤덕

민병덕 · 서범수 · 소병훈

이상헌 · 이용빈 · 이채익

정성호 · 한병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는 장기등기증자,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,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·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.

이와 관련,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,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 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기기증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국내 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,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 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 임.

이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

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, 제31조,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

제31조제2항제4호 중 "장기등기증자"를 "장기등기증자, 장기등기증자의 유족"으로 한다.

제3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)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(기증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)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,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) ①	제10조(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	2
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4의2.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</u>
	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
	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
	류활동 지원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비밀의 유지) ① (생 략)	제31조(비밀의 유지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	
용하지 아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	4
목적을 위하여 <u>장기등기증자</u>	<u>장기등기증자,</u>
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	장기등기증자의 유족
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	
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	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
지원 등) ①・② (생 략)	지원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③ ------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④·⑤ (생략) <신 설>

----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 다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2(장기등기증자등과 장 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 환 등 교류활동 지원) ①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 등기증자등(기증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)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 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,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